

제4기('24~'26년)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 안내

2023. 11.



목 차

I. 사업 개요	1
II. 사업 내용	3
III. 사업자 선정계획	9
IV. 추진일정	11
V. 사업계획서 작성 및 유의사항 안내	11

I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4. 1. 1. ~ 2026. 12. 31. (3년 한도 내 1년 단위 연장)
- 선정방법 : 사업계획서 평가 후 고득점 기관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
- 사업예산 : '24년 예산 약 15,683백만원*
- * 전년 대비 10% 일괄감액 편성안으로 센터가 수행하게 될 최종 사업 유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역별 사업 예산(안) >

(단위 : 원)

시도	배정안		
	계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캠프
서울	2,038,790,000	1,035,450,000	1,003,340,000
부산	940,980,000	477,900,000	463,080,000
대구	784,150,000	398,250,000	385,900,000
인천	940,980,000	477,900,000	463,080,000
광주	627,320,000	318,600,000	308,720,000
대전·세종	784,150,000	398,250,000	385,900,000
울산	627,320,000	318,600,000	308,720,000
경기(남부)	1,411,470,000	716,850,000	694,620,000
경기(북부)	1,411,470,000	716,850,000	694,620,000
강원	627,320,000	318,600,000	308,720,000
충북	627,320,000	318,600,000	308,720,000
충남	784,150,000	398,250,000	385,900,000
전북	784,150,000	398,250,000	385,900,000
전남	784,150,000	398,250,000	385,900,000
경북	940,980,000	477,900,000	463,080,000
경남	940,980,000	477,900,000	463,080,000
제주	627,320,000	318,600,000	308,720,000
총계	15,683,000,000	7,965,000,000	7,718,000,000

* 예산과목명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 사업명 '생활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원'

** 예산과목명 '금연캠프' ▶ (유형1) 사업명 '금연캠프(전문치료형)' 및 '입원환자 금연지원서비스'

▶ (유형2) 사업명 '입원환자 금연지원서비스'

□ 주요 사업 내용

- ①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원) 지역사회 담배규제 정책 및 전략 수립 지원, 지역사회 금연 전문인력 역량강화 및 금연 환경조성, 지역사회 금연사업 성과관리 지원
- ② (생활터 금연환경 조성) 금연지원서비스 수요는 있으나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금연 취약계층(임대주택, 학교, 사업장 등)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 금연시도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③ (금연캠프(전문치료형)) 금연에 성공하기 어려운 중증·고도 흡연자 대상 전문적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④ (입원환자 금연지원서비스) 금연동기와 금연환경 등 조건이 갖추어진 입원환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 총 17개 기관

* 17개 시·도별로 1개 사업자 선정(경기 2개, 대전·세종 1개)

* 유형1 또는 유형2 중 선택(유형간 중복지원 가능)

(단, 중복지원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유형1과 유형2 각각 제출해야 하며, 사업 신청 공문에 유형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작성해야 함)

- (유형1) 총 8개 기관 이상
 - ①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원 + ②생활터 금연환경 조성 + ③금연캠프 (전문치료형) + ④입원환자 금연지원서비스(소속 병원)
- (유형2) 총 9개 기관 이하
 - ①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원 + ②생활터 금연환경 조성 + ③입원환자 금연지원서비스(소속 병원과 협력기관 추가)*

* 협력병원 선정 시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의무 포함

II 사업 내용

□ 제4기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 방향

비 전	지역사회 금연을 책임지는 전문기관
-----	--------------------

목 표	◇ 지역사회 금연사업 총괄 관리 ◇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고도화
-----	--

추진전략	추진과제
전문성 기반의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원 관리	① 지역사회 담배규제 정책 및 전략 수립 지원 ② 지역사회 금연 전문인력 역량강화 및 금연 환경조성 ③ 지역사회 금연사업 성과관리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고도화	① 금연캠프(전문치료형) 운영 효율화 ② 입원환자지원서비스 강화 ③ 금연취약계층 대상 「생활터 환경조성 사업」 고도화

성과 지표	
시도 전체 금연사업 관리 지표	센터 수행 서비스 관리 지표
① 지역 내 금연지원서비스 수혜율 ② 지역 전체 금연성공률 ③ 시도, 지역사회 보건소, 건보공단 지부 등 협력기관 만족도	① 지역자원 연계 협력 수행 건수 ② 금연캠프(전문치료형, 입원환자서비스) 서비스 등록 건수 및 금연성공률 ③ 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 등록 건수 및 금연성공률

1. 전문성 기반의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원 관리

◆ 지역 내 협력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담배규제정책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연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 강화

① 지역사회 담배규제 정책 및 전략 수립 지원

- (현황진단) 지역사회 흡연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금연지원서비스 요구도 등에 대해 조사·연구·분석하여 사업 계획 수립 시 결과 활용
- (정책지원) 시·도 및 시·군·구별 상황에 적합한 금연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개정 시 전문가 자문 등 담배규제정책 지원
- (지역사회 네트워크) 금연사업 관련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지역 협의체를 구성(시도협의)하여 금연정책 및 사업 관련 의견을 논의·조정하는 의사소통 활동 정례화

② 지역사회 금연 전문인력 역량강화 및 금연 환경조성

- (지역 내 상담 전문성 강화)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지역 내 보건소 상담사 등* 대상 맞춤형 전문교육 및 기술지원
 - * 보건소 금연상담사, 시도교육청 금연담당자, 학교 보건관리자, 사업장 안전관리자 등
- 금연상담사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보건복지인재원 교육, 국가금연지원센터 온라인 교육만으로 부족한 현장 중심, 실습 교육 지원
 -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전문상담인력 교육 수행체계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가금연지원센터, ~'23.12)
- (홍보활동)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연간 온·오프라인 홍보·캠페인 계획 수립·수행
 - * (예시) 세계 금연의 날 연계 캠페인 실시, 지역축제 연계 금연지원서비스 홍보 등

③ 지역사회 금연사업 성과관리 지원

○ (모니터링) 보건소 금연사업 컨설팅 지원(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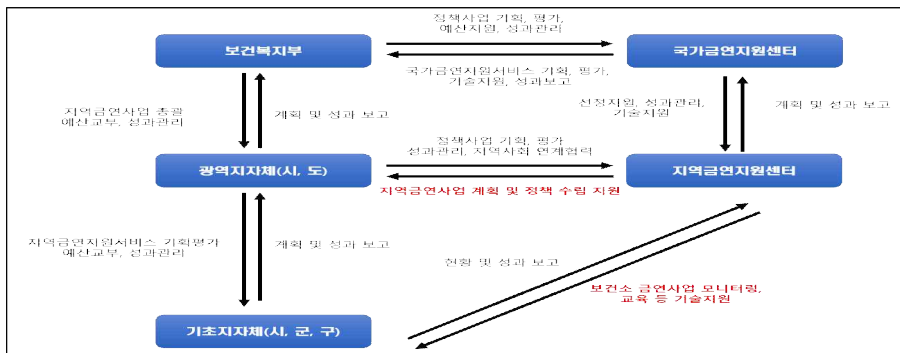
-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해 지역별 또는 보건소별 특성을 파악하여 전략 및 발전 방안 수립 지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지표 설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 목표 달성 등 성과관리 지원

○ (우수사례 선정 지원) 매년 하반기 복지부(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우수사례 평가 시 보건소 및 학교 금연사업 우수사례 선정 추천 권한 부여(신규)

<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금연지원센터 역할 >

구분	주요 역할
계획수립 기술지원	• 지역 현황을 고려한 지역사회 금연사업 방향 및 계획 수립 지원
성과관리 기술지원	• 지역사회 금연사업 모니터링 실시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지표 성과관리 지원
교육 실시	• 지역사회 금연사업 상담사 등 전문인력 교육 기획 및 운영 * 시·군·구 공무원 교육 제외
연구 및 정보제공	• 지역사회 금연정책 및 사업 효과성, 흡연율 감소를 위한 연구 실시
금연환경 조성 활동	•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지정지원 및 홍보·캠페인

< 지역금연지원서비스 수행 체계 >



2.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고도화

- ◆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효율성 높은 입원환자지원서비스 확대
- ◆ 생활터 금연환경 조성으로 금연시도자 발굴, 금연 사각지대 해소

① 금연캠프(전문치료형) 운영 효율화

○ (고도흡연자 중심 운영) 니코틴 의존도가 낮은 경증 흡연자는 배제, 중증·고도흡연자 중심으로 캠프 운영

- * (현행) 2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자/ 흡연 관련 질병 진단 후에도 흡연을 지속하는 자→ (개선) 해당 조건+니코틴 의존도 중증도 이상으로 한정

- 금연캠프 신청자 중 경증 흡연자는 보건소로 연계 의무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방문자 중 금연 반복실패하는 중증·고도흡연자는 금연캠프로 적극 연계 추진

○ (필수운영→선택운영) 지역금연지원센터 역량에 따라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선택사항으로 제시

- 단, 전문치료형 캠프 미선택 기관은 입원환자 금연지원서비스 강화 모형(지역금연지원센터 외 협력의료기관 1곳 이상 포함) 의무 시행

○ (지역안배) 지역별 인구수, 접근성 등 고려하여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수행 센터가 최소 8개소 이상이 되도록 선정

② 입원환자지원서비스 강화

- (목표인원 및 제공기관 확대) 금연동기와 금연환경 등 조건이 갖추어진 입원환자 대상 서비스 확대를 통해 금연지원 효과성 제고
 -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운영 센터) 소속 병원 내 입원환자 중 우선순위 높은 대상자 적극 발굴, 금연 서비스 제공
 -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미운영 센터) 소속 병원 외 1개 이상의 협력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입원환자 금연서비스 제공
- * 협력병원 선정 시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의무 포함
- (서비스 대상자) ①사업수행기관 또는 협력기관 병원에 입원중인 흡연자 중 과거 금연시도 경험 이 있고 금연 의지가 있는 자, ②주상병 담당 주치의가 금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금연을 권고하여 서비스 참가를 의뢰한 입원환자
- (제공 서비스) 6개월 동안 9회 이상 상담 의무, 입원기간 중 반드시 2회 이상 상담 실시(2주 이상 입원환자의 경우 3회 이상), 퇴원 후 내원 상담 어려운 경우 보건소 금연클리닉 적극 연계

< 금연캠프 기관 요건 및 수행인력 기준 >

금연캠프(전문치료형)	입원환자 금연지원서비스
• 연중 운영 가능한 병상 확보 • 숙박시설, 체력단련실, 상담실 등 공간과 시설 및 장비 확보 • 최소 5일 이상 전문적 치료 및 집중상담 제공 가능한 전문인력 및 기관 내 협조체계 마련	• 의료기관 내 진료과 의료진, 원무팀, 약국 등과 업무협조체계 마련 * 모든 진료과에서 의뢰할 수 있도록 <u>협력 네트워크 구축</u> • 병원 내 홍보방안 마련 • 상담실, 회의실, 교육장 등 공간 확보
• 사업 책임자 1명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 의사 1명, 간호사 1명, <u>심리상담제공자(전임) 2명,</u> <u>운영지원(전임) 1명,</u> 운동치료사 1명, 영양사 1명	• 사업 책임자 1명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 의사 1명, 간호사 1명, <u>심리상담제공자(전임) 2명,</u> <u>운영지원(전임) 1명</u>

* (유형1) 수행인력 기준에 따른 금연캠프(전문치료형) 인력으로 입원환자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가능

* (유형2) 입원환자 금연지원서비스 수행인력 기준에 따라 운영

③ 금연취약계층 대상 「생활터 금연환경 조성사업」 고도화

※ 3기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의 사업 대상을 개인 단위에서 조직·시설 단위로 확대 및 보건소 사업(‘찾아가는 이동클리닉’)과 구별하기 위해 명칭 변경

< 금연 취약계층 기준 >

- (금연 취약계층) 금연지원서비스 수요는 있으나 미충족된 흡연 계층
 - (주거환경)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흡연자 집단
 - * (예)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 (교육환경)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소속되어 있는 흡연자 집단
 - * (예) 흡연 청소년, 대학생 등 청년 흡연자 등
 - (근로환경) 감정노동직, 단순노동직, 특수업무직, 판매직에 종사하는 흡연자 집단
 - * (예) 콜센터, 물류센터, 공장 생산직, 건설일용직 등 종사자

- (추진방향) 금연지원서비스 수요는 있으나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임대주택, 학교, 사업장 등의 금연환경 조성 수요 파악, 모집 및 선정
 - 조직차원의 건강 관련 규범, 금연 지지적 환경 등에 대한 평가 및 진단, 금연시도자 발굴 및 유인 제고, 서비스 제공
 -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컨설팅(프로그램 운영지원 포함) 및 모니터링
- (학교흡연예방 지원) 학교 내 흡연예방교육(전담강사 파견 지원) 및 흡연학생 금연상담 등
 - 학교 내 흡연예방교육 1차 지원은 지역 내 보건소에서 실시하되, 보건소 차원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 지역센터에서 전담 강사 파견 등 실시
 - * 청소년 흡연율이 높고 전문강사 풀 부재한 3개 지역(광주, 경기, 충북) 우선적으로 전문강사 양성 중 (국가금연지원센터, '23.8월~, 현재 147명 양성)
- (사업장 금연환경 조성사업) 금연취약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발굴, 사업장 현장 환경 진단, 보건관리 담당자 대상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 그동안 국가금연지원센터 중심으로 제공해오던 프로그램을 지역 금연지원센터 프로그램으로 이관, 현장 확산 가능성 제고
 - * 사업장 금연환경 조성 프로그램개발, 시범운영중 (금연운동협의회, ~'23.12)
 - * 건강친화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 추진 ('24~)

III 사업자 선정계획

□ 신청자격 요건

- 해당 시·도* 내에서 지역금융 민간보조사업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 * 주소지가 해당 시·도일 필요는 없으나 해당 시·도 내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것
 -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비영리특수법인 등
- 금연캠프를 위한 병상*, 생활터 금연환경 조성사업의 업무 및 상담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 * 금연캠프 사업 수행을 위한 의료기관을 보유 또는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 병상 확보
 - ** 필요 시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 가능

□ 선정조건

- 지역금융지원센터 사업 수행 시 자산취득은 불가하며, 현재 지역 금융지원센터로부터 양도받은 물품*의 우선 사용 권고
 - * 국고보조금으로 구매된 장비, 사무기기, 소모성 물품 등 기타 사업 관련 모든 물품
- 선정된 기관은 서비스 대상자가 지역별로 불균등할 경우, 지역별 사업목표치 조정에 협조해야 함
- 선정된 기관은 사업 수행기간 중 사업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업 변경에 협조해야 함

□ 선정방식

- 17개 시·도별 1개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총 17개 센터)
 - *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 2개 사업자 선정, 세종은 대전에 통합 운영
- 1개 사업자는 1개의 시·도에만 지원 가능(시·도간 중복지원불가)
-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 등은 사업 설명회에 참가한 후 사업계획서 작성
 - * 2023년 11월 8일(수) 14시 사업 설명회 개최 예정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후 개별 통보('23년12월)
-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 1개 시·도에 1개 기관만 신청한 경우, 1차 심사 결과 70점 이상 센터에 대해 추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평가항목

- 성과지표의 적절성,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및 사업수행능력,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 등으로 구성

□ 평가방법

- 보건복지부가 공고문에서 제시한 신청 서류를 기한 내 제출
- 신청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심사하되, 명백히 자격이 없는 경우, 구비서류가 미비하고 보완하기 곤란하거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비대면 심사 추진
 - * 신청기관은 평가 시 사업계획서에 대한 대면 발표 준비해야 함(평가 일시 및 장소는 추후 통보 예정)
 -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된 발표자료는 수정 또는 회수 불가

□ 문의처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융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IV 추진일정

- 사업 모집 공고 : '23. 11. 6.(월) ~ '23. 11. 24.(금) 17시까지
- 사업 설명회 : '23. 11. 8.(수)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선정평가 : '23. 12.
- 최종 수행기관 선정 및 통보 : '23. 12.
- 사업 계획 승인 및 계약 : '24. 1.

V 사업계획서 작성 및 유의사항 안내

-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 공모 사업명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역을 명시
 - * (예)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서울)
 - 사업계획서 사업수행기관에 금연캠프(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입원환자 금연지원서비스)의 경우 실제 서비스를 책임지는 구체적 의료기관을 제시
 - * (예) 00대학병원, 00의료원 등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항목의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작성내용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객관적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접수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기관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를 요청기한 내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신청기관 미확인(연락불능) 및 착오로 인한 평가 불참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 1개의 기관은 1개의 시·도 지역금연지원센터에만 지원이 가능하고(중복 지원불가), 사업유형은 유형1 또는 유형2 중 선택하여 지원(중복지원가능)
- 선정기관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세부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확정된 세부계획서에 따라 사업 추진
 - * 사업계획서는 신청 후 보완과정에서 수정·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중에도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제안요청서, 사업계획서 작성양식(양식5종), 기타 유의사항 등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참고